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08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강준현·김남근·유동수

김현정 · 김용만 · 박홍배

김문수 · 허성무 · 박정현

이재관 · 서영석 · 이광희

송재봉 · 정태호 · 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3제4항 중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결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주식의 소각
- 2. 주주에 대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 균등 배분
- 3.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처분
- 4.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 교부
-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 6. 증권시장에서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

- 7.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의 처분
- 9. 증권시장에서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의 처분
-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 11.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 권의 발행(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 12. 제11호에 따른 기업의 교환사채권 해외 발행으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 채권의 발행
- 13.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 여 자기주식의 처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 분의 특례) ① ~ ③ (생 략) 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 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 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 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 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한다)하는-----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방법 등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 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 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 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주식의 소각
- 2. 주주에 대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균등 배분
- 3.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처분
- 4.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 교부
-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 른 자기주식 교부
- 6. 증권시장에서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
- 7.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 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 주식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의처분
- 9. 증권시장에서 법령 또는 채 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의 처분
-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 11.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해당한다.
- 12. 제11호에 따른 기업의 교환
 사채권 해외 발행으로서 자기
 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
 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 13.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의 처분